

지난 3년 동안 오바마 정부는 국토안보부의 단속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국토안보부는 최근에 인력자원을 범법자와 위협한 인물을 추방하는데 집중하고 어릴 때 미국에 부모와 함께 밀입국을 하거나 불법이 된 외국인은 법적조건이 맞는 경우 국토 안보부에서 기소재량권을 발휘하여 추방을 보류하겠다고 지난주 6월15일 발표했다.

추방을 보류 받으려면 신청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방을 보류 받으려면 미국에 16세 미만에 왔어야 한다. 둘째, 올해 6월15일 이전에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했고 6월15일에 미국



이동찬

이민 변호사

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추방 보류를 받는다 고 신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추방 보류를 받으면 추방은 당장 당하지 않지만 별도

Permit)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만 하면 노동허가증은 받는다.

그리고 사전에 이민단속국에서 추방소송중지 신청을 거절했다더라도 6월15일 발표에 의거해 다시 추방 보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제는 추방 보류 해당 조건이 좀 더 명확하므로 추방 소송중지신청은 거절당했다더라도 추방 보류를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는 추방 보류를 받기위해 이용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대해서도 6월15일에 언급했다. 미국에 지난 5년 동안 체류했다는 것은 은행기록, 병원기록, 학교기록,

오바마 정부의 추방 보류

에 있었어야 한다. 셋째, 현재 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미군 또는 해안경비대를 명예롭게 제대했어야 한다. 넷째, 추방 보류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중범죄, 큰 경범죄, 세 번 이상의 사소한 경범죄 혐의가 없어야 하며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적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30세 미만인 외국인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추방을 보류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접한다면 이민국은 기소재량권을 발휘하여 추방을 즉시 보류하도록 6월 15일에 제정된 국토안보부의 지침서는 이민국에 지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추방 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추방 소송에 벌써 회부되었다면 이민단속국은 2년씩 추방 소송을 보류하도록 지침서는 지시한다. 또한 6월15일 지침서에서는 기소재량권을 발휘하기위해 이민국으로 하여금 확실하고 효율적인 추방 보류 방법과 절차를 60일 내에 이민국이 만

의 체류신분은 받지 못한다. 그리고 추방 보류를 받은 후 추방 보류 신청자 자격을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추방 보류를 여러 번 받았다고 나중에 자동으로 추방 보류가 갱신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나중에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취업이민, 가족이민, 투자이민 등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이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한 후 불법 체류를 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방 보류를 받았더라도 언제든지 정부에서 정책을 또다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서 추후에 추방 보류를 받았던 신청자들이 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추방 보류의 혜택은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 또 한 가지가 있다. 추방 보류를 받으면 노동허가증(Work

직장기록 등으로 증명할 수 있고 학교를 다녔다는 것은 학교기록, 성적증명서 등으로 가능하고 군대에서 제대한 것도 군대기록, 제대기록, 군 건강기록 등으로 증명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이 중범죄 기록 또는 큰 경범죄 기록이 있으면 추방 보류는 신청할 수 없다. 중범죄는 1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큰 경범죄는 1년 미만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 폭행, 협박, 성폭행, 사기, 절도, 음주운전, 무기소지, 마약범죄 등이 큰 경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소한 경범죄라도 외국인이 3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추방 보류 조치를 받을 수 없다.

범죄기록 외에도 신청인이 국가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추방 보류 조치는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든지 또는 테러 조직 활동에 참여 했다면 추방 보류 조치는 받을 수 없다.

(213) 291-9980